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637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9. 4.
3. 회 부 일: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으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기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범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 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및 제7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¹⁾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흉기난동사건 등 흉악범죄 빈발에 따라 이러한 중대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중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 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2조의2(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1)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는기는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음.⁴⁾

‘절대적 종신형’은 그동안 계속되어온 사형제 폐지 논의와 관련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어 왔음. 이는 현행 「형법」상 무기형은 무기징역형과 무기금고형으로 나뉘고,⁵⁾ 무기형을 선고받아 20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한 자가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⁶⁾ 가석방 시 그 가 행한 범죄로 인한 책임 정도가 형의 계속적 집행을 요구하는지는 별도의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죄자라도 뉘우침이 뚜렷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함. 이러한 가석방이 일반 국민의 형사적 정의감과 책임주의에 배치될 수 있으며, 또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편의주의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현행 「형법」상 무기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

국회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은 그동안 주로 사형제 폐지 법안들과

4) 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5)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6)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7)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2000), 228면.

관련하여 대체형벌로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왔으며, 21대 국회는 사형제 폐지와 무관하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⁸⁾도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8)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제2123539호),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안(제2123727호), 정부안(제2125236호), 조수진의원 대표발의안(제2125265호),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안(제2125365호)

2) 종신형 관련 주요외국의 현황⁹⁾

① 미국: 49개주에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27개주 사형제 유지)

미국의 경우 현재 50개주 중 23개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27개주는 사형 제도를 유지 중인데,¹⁰⁾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엄벌주의 정책과 사형 폐지 흐름에 따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부각돼 왔음.

2021년 기준으로 알래스카주¹¹⁾를 제외한 모든 주(49개주)와 연방이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여 총 55,945명이 수형 중에 있으며, 이는 교정시설 수형자 28명당 1명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함.¹²⁾

절대적 종신형은 특히 사형이 폐지된 주에서는 법정 최고형으로서 엄벌주의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인간 존엄성 훼손, 형벌의 엄격성에 상응하는 방어권 보장의 미흡 등으로 인한 위헌성 문제¹³⁾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화의 어려움, 교도소 과밀화 및 교정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⁴⁾

9) 외국 입법례 부분은, 김대근·이덕인·권지혜, 『사형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0), 44-316면 및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52집(2022년)의 관련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10)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States and Capital Punishment』 - [https://www.ncsl.org/civil-and-criminal-justice/states-and-capital-punishment\(2024.9.5.최종방문\)](https://www.ncsl.org/civil-and-criminal-justice/states-and-capital-punishment(2024.9.5.최종방문)).

11) 다만, 알래스카주도 최고 형기를 99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

12) 권지혜, 앞의 글, 6면.

13) 미국 연방대법원이 절대적 종신형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내린 사례는 아직 없으나,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비살인범죄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거나 개별적 고려 없이 필요적 선고를 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됨을 밝힌 후[Graham v. Florida, 130 S. Ct. 2011, 2023 (2010); Miller v. Alabama, 132 S. Ct. 2455 (2012)], 절대적 종신형 인원 중 미성년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함. 권지혜, 앞의 글, 18-19면.

② 유럽: 절대적 종신행 존재, 상대적 종신행만 존재, 종신행 없음 등 다양한 형태(사형제는 대부분 폐지)

46개 유럽 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¹⁵⁾ 회원국 가운데 종신행 제도가 없는 나라는 9개국이고, 나머지 37개국 중에서 15개국이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행을 운영하며, 22개국은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행만 운영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으로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지는 않고 있음.¹⁶⁾

< 유럽평의회 46개 회원국들의 종신행제도 현황 비교 >¹⁷⁾

절대적 종신행 존재 (15개국)	상대적 종신행 및 절대적 종신행 모두 존재(11개국)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헝가리, 튀르키예, 그리스, 불가리아
	절대적 종신행만 존재(4개국)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몰타
상대적 종신행만 존재 (22개국)		독일,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사이프러스,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종신행 없음(9개국)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이하에서는 주요국가의 종신행 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함.

14) 김대근,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세미나 자료집(2021년), 31면.

15)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유럽의 46개 나라가 참여하는 기구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쳐 유럽평의회가 제시하는 결정의 강제력은 없으나 회원국 대부분은 그 결정에 따라 개별 국가의 관련 정책을 조정할 정도로 막강하고, 산하에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등을 두고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제도는 물론이고 교정정책을 포함한 형사정책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

16) 현재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아니나 러시아도 실질적인 사형폐지 상황이며, 유럽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벨라루스라고 함.

17) 김대근·이덕인·권지혜, 『사형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0), 306-313면.

독일은 1949년 기본법 제정 시 사형 제도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만을 두었으나, 197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음.¹⁸⁾ 그에 따라 1981년 형법 개정을 통해 종신형에 가석방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 종신형으로 전환한 바 있음. 최소 15년간의 복역 중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가석방이 허용되며,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모살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됨.

영국의 경우 1965년 모살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된 이래 종신형이 최고형벌의 지위를 물려받음. 종신형은 모살죄에 부과되는 ‘필요적 종신형(Mandatory Life Sentence)’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선고되는 ‘재량적 종신형(Discretionary Life Sentence)’의 두 종류가 있음. 필요적 종신형이든 재량적 종신형이든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종신복역명령(Whole Life Order)’이 추가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허됨.

다만, 종신복역명령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는 모살 가운데에서도 극히 일정한 경우, 예를 들면, 계획적인 유아 성범죄를 수반하는 모살죄, 가학적인 모살죄, 테러범죄, 약취 유인을 수반하는 계획적인 모살죄 등에 한정됨.

18) 당시 연방헌법재판소는 종신형 자체가 기본법의 ‘인간의 존엄’보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격파괴의 가능성이 있음을 긍정하고, 인간의 존엄에 합치되는 종신형의 집행은 사면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가석방의 입법을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라고 판시하였음.

프랑스의 경우 종신형은 가중모살죄, 반역죄, 테러, 마약범죄의 주요인물과 그 밖의 고문이 수반되거나 사망의 결과가 야기되는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로 가중살인죄 이외의 범죄에 종신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는 ‘보안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18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강간 또는 고문 등 가혹행위와 결합된 아동살해죄, 국가공무원에 대한 계획적 모살죄,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테러의 경우, 법원은 최대 30년의 보안기간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아예 수감자가 가석방 자격을 가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다만, 종신형 수형자에게도 특별사면은 허용되므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은 있음.

네덜란드의 경우 1870년 통상의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하면서 그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였는데, 실제 적용은 상당히 드뭄. 일단 종신형이 선고되면 대다수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들과 달리 가석방은 전혀 허용되지 않음.¹⁹⁾

다만, 종신형 수형자에게 사면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데,²⁰⁾ 그것은 왕명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고 종신형에 대한 사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9) 유럽인권재판소는(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은 2016년 이래로 가석방의 여지가 없는 네덜란드의 종신형이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이어 오고 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오랫동안 사면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네덜란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비판을 받아들여 종신형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김대근·이덕인·권지혜, 앞의 글, 262면.

20) 참고로 18대 국회에서 주성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종신형”을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 수용하며, 「형법」에 따른 가석방을 할 수 없고, 「사면법」에 따른 사면과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는 징역형”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3)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관한 찬반론

① 찬성론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찬성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 현행 「형법」상 상대적 종신형으로 운영되는 무기형은 최소복역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 이들을 통한 강력범죄 재발의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 중대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함.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악한 연쇄살인범 또는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중대 범죄자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을 선고하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대 흉악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통해 피해자와 시민의 응보감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²¹⁾

21) 최근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효과를 위해 사형을 선택하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23.7.13. 선고 2023도 2043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음.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면, 2019년 금을 거래하려 온 40대를 살해하는 등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선고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었음.

② 반대론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음. 헌법 제10조²²⁾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제2항²³⁾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절대적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시키고 구금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격권을 박탈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²⁴⁾

둘째, 행형의 목적에 맞지 않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²⁵⁾로 하는데, 절대적 종신형은 재사회화나 사회복귀라는 특별예방 목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서 사형제보다 더욱 잔인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임.²⁶⁾

그러나,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하였음.

22)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3)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4) 주현경, 앞의 글, 397면.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법무부공고제2023-299호) 중인 형법 일부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공동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형사정책적 정당성이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며, 교화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재사회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음(2023. 8. 21.).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6)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연세대 법학연구」제17권 제3호(2007).

셋째, 교정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음. 절대적 종신형 도입 시 장기간 수용으로 국가의 형 집행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되며, 특히 고령 수용자 증대로 인한 의료비용,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건설비용 등의 증가가 문제될 수 있음.²⁷⁾

27) 권지혜, 앞의 글, 24-25면.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이 허가된 자는 2015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그 이후 다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17명, 2022년에는 16명에 이르고 있음. 대체로 무기형이 흉악범죄에 대하여 선고되며,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인정됨.

<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 현황(2013년~2022년) >²⁸⁾

(단위: 명)

구분 연도	합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무기
2013	6,148 (100%)	1,373 (22.3%)	2,770 (45.1%)	876 (14.2%)	528 (8.6%)	212 (3.4%)	225 (3.7%)	164 (2.7%)	-
2014	5,361 (100%)	984 (18.4%)	2,499 (46.6%)	900 (16.8%)	530 (9.9%)	160 (3.0%)	194 (3.6%)	94 (1.8%)	-
2015	5,480 (100%)	1,045 (19.1%)	2,664 (48.6%)	834 (15.2%)	514 (9.4%)	160 (2.9%)	175 (3.2%)	87 (1.6%)	1 (0.0%)
2016	7,126 (100%)	1,367 (19.2%)	3,420 (48.0%)	1,020 (14.3%)	564 (7.9%)	244 (3.4%)	267 (3.7%)	242 (3.4%)	2 (0.0%)
2017	8,247 (100%)	1,810 (21.9%)	3,840 (46.6%)	1,282 (15.5%)	614 (7.4%)	238 (2.9%)	294 (3.6%)	158 (1.9%)	11 (0.1%)
2018	8,667 (100%)	1,891 (21.8%)	3,750 (43.3%)	1,430 (16.5%)	740 (8.5%)	300 (3.5%)	315 (3.6%)	201 (2.3%)	40 (0.5%)
2019	8,139 (100%)	1,997 (24.5%)	3,415 (42.0%)	1,300 (16.0%)	672 (8.3%)	317 (3.9%)	316 (3.9%)	108 (1.3%)	14 (0.2%)
2020	7,876 (100%)	1,788 (22.7%)	3,530 (44.8%)	1,266 (16.1%)	618 (7.8%)	283 (3.6%)	249 (3.2%)	124 (1.6%)	18 (0.2%)
2021	9,354 (100%)	1,542 (16.5%)	4,388 (46.9%)	1,701 (18.2%)	819 (8.8%)	348 (3.7%)	384 (4.1%)	155 (1.7%)	17 (0.2%)
2022	10,281 (100%)	1,964 (19.1%)	4,417 (43.0%)	2,019 (19.6%)	943 (9.2%)	361 (3.5%)	457 (4.4%)	104 (1.0%)	16 (0.2%)

28)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172면.

또한,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 50개주 중 27개주가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도 운영하고 있어 개정안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유사성이 있는 점(사형제와 절대적 종신형의 병존),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도 상대적 종신형에 해당하는 기존의 무기형은 여전히 존치되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 도입으로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점,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에도 사면 제도를 통한 사회 복귀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 위헌성 문제가 상당 부분 상쇄²⁹⁾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절대적 종신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형제 폐지의 대체형벌로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들과 그 배경이 다소 상이한 점(사형제 폐지의 대체형벌로서의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는 위헌성 지적과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행형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 여부는 앞서 살펴본 찬반논거와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기능 및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29) 허일태, 앞의 글, 58면.

문의처
(02-6788-5056)